

【 4 】 양주군리장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11. 14

제출자 양주군수

□ 개정이유

관내 아파트 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현행 139개리에서 5개리를 증설하여 144개리로 조정(안 제2조)
- 양주읍 광사 2리를 분할하여 광사 3리 신설(신도아파트 지역)
 - 양주읍 삼승 1리를 분할하여 삼승 3리 신설(나래아파트 지역)
 - 양주읍 고읍리를 분할하여 고읍 2, 3리 신설(TS푸른솔, 현대아파트지역)
 - 백석면 복지 1리를 분할하여 복지 3리 신설(동화아파트 지역)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중 양주읍 광사리 정원란의 “2”를 “3”으로, 삼승리 정원란의 “2”를 “3”으로, 고읍리 정원란의 “1”을 “3”으로, 백석면 복지리 정원란의 “2”를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음면명	리명	정원		비고
		현행	개정안	
회천읍	덕정리	7	-	
	봉양리	3	-	
	회암리	2	-	
	율정리	2	-	
	옥정리	3	-	
	고암리	2	-	
	덕계리	17	--	
	회정리	6	-	
양주읍	유양리	2	-	
	어둔리	1	-	
	남방리	4	-	
	마전리	2	-	
	산북리	3	-	
	광사리	2	3	+1
	만송리	3	-	
	삼승리	2	3	+1
은현면	고읍리	1	3	+2
	용암리	3	-	
	선암리	2	-	
	운암리	2	-	
	봉암리	1	-	
	하패리	2	-	
	도하리	2	-	

읍 면 명	리 명	정 원		비 고
		현 행	개정안	
남 면	산 산 리	5	-	
	신 암 리	2	-	
	매 곡 리	1	-	
	구 암 리	1	-	
	두 곡 리	1	-	
	경 신 리	1	-	
	상 수 리	3	-	
	입 암 리	2	-	
	한 산 리	2	-	
	황 방 리	2	-	
광 적 면	가 납 리	3	-	
	광 석 리	2	-	
	우 고 리	1	-	
	비 암 리	3	-	
	효 촌 리	2	-	
	덕 도 리	3	-	
	석 우 리	1	-	
백 석 면	방 성 리	5	-	
	오 산 리	4	-	
	복 지 리	2	3	+1
	가 업 리	2	-	
	홍 죽 리	3	-	
	연 곡 리	2	-	
	기 산 리	1	-	

리 분리대상 지역현황

(2000. 8. 31 현재)

읍면별	현 행			조 정 후			조정사유
	리 명	가구수	인구수	리 명	가구수	인구수	
양주읍	광사2리	599	1,973	광사2리	252	828	신도APT 지역분리
				광사3리	347	1,145	
	삼중1리	692	2,223	삼중1리	268	842	나래APT 분리
				삼중3리	424	1,381	
	고읍리	1,117	3,861	고읍1리	328	1,092	
				고읍2리	586	2,075	TS푸른솔APT 분리
				고읍3리	203	694	현대APT 분리
백석면	복지1리	2,186	7,031	복지1리	1,236	3,825	동화APT 지역분리
				복지3리	950	3,206	

리 · 반 조정현황

읍면별	현 행		조 정(안)		증 감		비 고
	리 수	반 수	리 수	반 수	리 수	반 수	
계	139	693	139	809	5	116	
회천읍	42	234	42	234			
양주읍	20	86	24	147	4	61	
은현면	12	73	12	73			
남면	20	87	20	89		2	
광적면	15	86	15	86			
백석면	19	71	20	121	1	51 △1	
장흥면	11	56	11	59		3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와 廣城市의 管轄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

③特別市 또는 廣城市가 아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改正 94·12·20>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區域變更是 特別市長·廣城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9·8·31>

④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產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관할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產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產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が 그 事務와 財產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99·8·31>

第6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과 미리 協議를 거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사와 미리 協議를 거친 후 당해 地方自治

제18편 읍·면·리·반 양주군리장정원조례

양주군리장정원조례

[1971. 1. 15]
[조례 제277호]

1972. 8.25 조례 제 337 호
 1973. 6.13 조례 제 365 호
 1974.12.31 조례 제 410 호
 1976. 1. 9 조례 제 442 호
 1980. 1. 8 조례 제 657 호
 1980. 7.15 조례 제 700 호
 1981. 7.31 조례 제 750 호
 1982. 4. 1 조례 제 784 호
 1983. 2.14 조례 제 895호
 1985. 5.29 조례 제1033호
 1985. 9.30 조례 제1065호
 1987. 1.12 조례 제1125호
 1987. 7. 1 조례 제1165호
 1987. 9.12 조례 제1168호
 1988. 4.30 조례 제1204호
 1989.12.27 조례 제1301호
 1993. 5.29 조례 제1454호
 1996. 4. 1 조례 제1561호
 1999. 5.10 조례 제1704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읍 면 명	리 명	정 원	비 고
회 천 읍	덕 정 리	7	
	봉 양 리	3	
	회 암 리	2	
	울 정 리	2	

제18편 음·면·리·반 양주군리장정원조례

음 면 명	리 명	정 원	비 고
주 내 면	덕 정 리 3		
	고 암 리 2		
	덕 계 리 17		
	희 정 리 6		
	유 양 리 2		
	어 둔 리 1		
	남 방 리 4		
	마 전 리 2		
	산 북 리 3		
	광 사 리 2		
온 현 면	만 송 리 3		
	삼 승 리 2		
	고 읍 리 1		
	옹 암 리 3		
	선 암 리 2		
	운 암 리 2		
	봉 패 리 1		
	하 하 리 2		
	도 산 리 2		
	남 암 리 5		
남 면	신 곡 리 2		
	신 암 리 2		
	매 곡 리 1		
	구 암 리 1		
	두 곡 리 1		
	경 신 리 1		
	상 수 리 3		
	입 암 리 2		
	한 산 리 2		
	황 방 리 2		
광 적 면	가 남 리 3		
	광 석 리 2		

제18면 읍·면·리·반 양주군리장정원조례

읍 면 명	리 명	정 원	비 고
	우 고 리	1	
	비 암 리	3	
	효 촌 리	2	
	덕 도 리	3	
	석 우 리	1	
백 석 면	방 성 리	5	
	오 산 리	4	
	복 지 리	2	
	가 업 리	2	
	홍 죽 리	3	
	연 곡 리	2	
	기 산 리	1	
장 홍 면	교 현 리	1	
	율 대 리	2	
	부 곡 리	2	
	석 현 리	1	
	일 영 리	2	
	삼 상 리	2	
	삼 하 리	1	

부 칙 (1971. 1. 15 조례 제 277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8. 25 조례 제 337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6. 13 조례 제 365 호)

이 조례는 1973. 7. 1부터 시행한다.

제18편 읍·면·리·반 양주군리장정원조례

부 칙 (1976. 1. 9 조례 제 442 호)
이 조례는 197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 8 조례 제 657 호)
이 조례는 1980. 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5 조례 제 700 호)
이 조례는 198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31 조례 제 750 호)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3. 30 조례 제 784 호)
이 조례는 1982.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2. 14 조례 제 895 호)
이 조례는 1983. 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5. 29 조례 제 1033호)
이 조례는 1985.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30 조례 제 1065호)
이 조례는 1985.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12 조례 제 1125호)
이 조례는 198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7. 7. 1 조례 제 1165호)
이 조례는 198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9. 12 조례 제 1168호)
이 조례는 1987. 9. 10부터 적용한다.

제18편 읍·면·리·반 양주군리장정원조례

부 칙 (1988. 4. 30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1988. 5.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 27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9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10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관내 아파트 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현행 139개리에서 5개리를 증설하여 144개리로 조정(안 제2조)

- 양주읍 광사 2리를 분할하여 광사 3리 신설(신도아파트 지역)
- 양주읍 삼송 1리를 분할하여 삼송 3리 신설(나래아파트 지역)
- 양주읍 고읍리를 분할하여 고읍 2, 3리 신설(TS푸른솔, 현대아파트지역)
- 백석면 복지 1리를 분할하여 복지 3리 신설 (동화아파트 지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4조제6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8,200천원

- 리장수당(보상금) : $100,000\text{원} \times 5 \text{인} \times 12\text{월} = 6,000,000\text{원}$
- 리장상여금 : $100,000\text{원} \times 5 \text{인} \times 2\text{회} = 1,000,000\text{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text{원} \times 5 \text{인} \times 2\text{회} \times 12\text{월} = 1,200,000\text{원}$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전예고결과 : 2000. 9. 9 ~ 9.28 까지 입법예고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 전문